

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·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사유

- 환경부지침에 따라 조례조항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등이 필요한 조항 및 법령상의 용어와의 통일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며
-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의 위탁계약 체결내용,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등을 상호통보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도모와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·점검의무를 규정하는조항을 마련하기 위함

2. 관련법령

- 폐기물관리법 제13조·제15조
- 음식물류폐기물수집·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(환경부2002.11.)

3. 주요골자

- “음식물쓰레기”를 법령상의 용어인 “음식물류폐기물”로 변경
-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은 적정처리시설을 갖춘자가 재활용토록하여 부적정처리를 예방(안제6조 1)

- 감량의무사업장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를 한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,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(안제7조 3호)
-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탁 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, 자치단체간에 위탁 계약 체결내용,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등을 상호 통보토록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함(안제12조제4항내지 제5항)
-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의 관리·운영에관한 근거 마련(안제13조제3항)

4. 검토의견

본 조례 개정건은

-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처리계약 및 행정처분등 주요내용을 자치단체간의 상호통보와 협조, 감량의무사업장의 변경신고의무,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 근거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수거체계확립과 재활용을 촉진 부적정처리를 예방하고 대민 감량 인식제고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며
-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법령상의 용어로 통일토록 환경부 조례준칙에 명시되어있는 점을 감안

위 조례개정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2003년 6월